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개정이유

- 2005.8.4 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,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고,
-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이 2006.1.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운영 상황공개제도」를 「지방재정공시제도」로 운영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제 도입(안제16조)
- 기금운용의 성과분석(안제24조)
- 재정운용상황의공시(안제25조 내지 안제29조)

검토의견

- 제안의 타당성을 살펴본바 2006.1.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, 주민의 자율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시스템인 지방재정공시 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,
- 조례안의 법적 형식과 개별조문의 내용도 개정된 관련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6. 22

보고자 : 김 찬 재